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(병합)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업무상횡령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배임수재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}·조세범처벌법위반·배임증재·업무상배임(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:회사정리법위반)·회사정리법위반



[광주지방법원 2005. 8. 9. 2004고합421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신봉수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김용출외 8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징역 2년에, 피고인 2(항소심 판결의 공소외 15), 3(항소심 판결의 공소외 7)을 각 징역 1년 6월에, 피고인 4(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), 5를 각 벌금 10,000,000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4, 5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.

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8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, 58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, 56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, 피고인 2, 3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1로부터 3,585,014,653원을 추징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1997. 11. 30. 및 1997. 12. 31.자 각 업무상횡령의 점,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의 점, 회사정리법위반의 점, 피고인 4에 대한 직무에 관한 재산상 이익 수수로 인한 회사정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[이유]

1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